

의안번호	2217193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6. 6. 15.
추계번호	26B12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5 (면허 등 취소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신설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재량 규정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27조의6 (면허 등 반납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신설	시·도지사는 승객의 편의 증대 및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송사업자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반납받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차량 및 설비 등을 인수하여 버스공영제 등의 실시에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7조의5(면허 등 취소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7조의6(면허 등 반납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신설	

2. 상세 사유

□ 현행 버스운영체제는 공영제·민영제·준공영제로 구분됨

-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을 통하여 노선버스 등을 운영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버스 공영제¹⁾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 화성시, 전주시-완주군(마을버스), 성주군(다만, `26년부터 민간 운영 중), 정선군, 양구군, 목포시, 신안군, 제주시[공영제(읍면지역) 및 준공영제 혼합 운영 중]가 있음
- 준공영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버스 준공영제는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관리형(노선입찰형)²⁾으로 구분됨
 -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개별 운송업체가 버스를 운영하여 얻은 모든 수입을 지자체와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구성된 수입금공동관리기구에서 관리하고, 수입금공동관리기구에서 개별 운송업체에게 정해진 기준(표준운송원가)을 바탕으로 운행실적(운행대수, 운행거리 등)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서, 표준운송원가(적정이윤을 포함함)를 기반으로 산정된 총 운송비용에 비해 총 운송수입이 모자란 부분(적자분)은 지자체가 지원함
 - 노선관리형(노선입찰형)은 관할관청이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노선별로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을 정산하여 모자란 부분을 재정지원하는 유형임(입찰에 의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노선별로 정산)

※ 준공영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남(창원)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버스 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 1] 버스 준공영제 현황: 2025년 기준

지역	유형	비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관리형	광역버스
서울특별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부산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대구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인천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시내버스, 광역버스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대전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일부업체 제외
경기도	노선관리형, 수입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18년), 시내버스('24년)
충북 청주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경남 창원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강원 춘천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주: 1) 인천광역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중

2)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단계별로 추진 중
자료 : 국토교통부

[표 2]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2019	2,915	1,300	1,320	1,271	733	578	911	352	—	—	—
2020	1,705	1,881	1,819	1,906	1,162	1,000	985	879	—	—	—
2021	4,561	3,672	1,946	2,181	1,221	1,051	1,045	2,274	—	510	602
2022	8,114	3,056	2,577	2,648	1,380	1,166	1,190	2,953	—	660	826
2023	8,915	2,710	2,406	2,816	1,338	1,150	1,171	2,290	141	686	838
2024	4,000	2,600	2,209	2,514	1,364	946	1,193	6,525	148	717	856
2025	4,575	2,950	2,145	3,100	1,422	1,024	1,210	7,396	160	692	878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³⁾, 승객의 편익 증대 및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송사업자의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반납’받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영제 등으로 운영되던 버스 노선이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됨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기존 운송사업자의 차량·설비 인수에 따른 보상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의 취소·반납에 따른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 지역, 운영 방식 및 규모, 운영 비용 및 운영 수입, 기존 운송사업자의 차량·설비 등의 인수 여부 및 보상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 지역, 운영 비용 및 운영 수입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 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8조·제36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8.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터미널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